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		
의안번호	제94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8.19.	회부연월일	2022. 8.19.

1. 제안이유

- 인구감소 및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읍면동별로 낙후 및 소외된 지역들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논산 건설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 -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- 나.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(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)
 -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논산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
- 다. 균형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)
 -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읍면동별로 낙후 및 소외된 지역들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논산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, 지방재정법 제9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다만, 조례제정안과 함께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95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8.19.	회부연월일	2022. 8.19.

1. 제안이유

-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,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연령 기준을 만39세에서 만45세로 확대 (안 제3조제1호)
- 나. 청년정책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장,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등 재정비 (안 제10조에서 제14조)
- 다.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명예보좌관 도입 (안 제18조제3항)
- 라. 청년정책 사업 대상 확대(안 제19조)
 -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(안 제19조제4호)
 - 자기계발, 건강관리, 여가활동, 교통·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(안 제19조제4호)
 -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(안 제19조제7호)
 - 지역유입 및 정착지원(안 제19조제7호)
- 마.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 지급 근거 신설(안 제21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-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,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청년기본법 제3조, 제4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		
의안번호	제96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8.19.	회부연월일	2022. 8.19.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(제3회 추경)에 반영하면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충남연구원 출연금 250,000천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
-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를 수행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,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